

## (주)플무원 경영위원회 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정관 제 37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위원회(이하 “ 위원회” 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직무와 권한)** ①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한다.

②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.

**제 3 조 (구 성)** 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 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③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.

**제 4 조 (위원장)**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
②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 5 조 (종 류)**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정기위원회는 매월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**제 6 조 (소집권자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 7 조 (소집절차)**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 8 조 (결의방법)**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 9 조 (부의사항)**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②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규정 제 10 조(부의사항) 제 2 호 (10) 단서, 제 3 호 (7) 단서, 동호 (13) 가목 단서 및 나목 ②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
2. 이사회규정 제 11 조(보고사항)에 의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
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**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 11 조 (이사회와의 관계)**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**제 12 조 (통지의무)**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 13 조 (의사록)**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 14 조 (간사)** ①위원회에 간사를 둔다

②간사는 재무관련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 15 조 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다.

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분할에 의한 사명 변경) 회사분할로 의하여 08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사명을 주식회사 풀무원에서 주식회사 풀무원홀딩스로 변경한다.

부 칙 (3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사명 변경) 14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사명을 주식회사 풀무원홀딩스에서 주식회사 풀무원으로 변경한다.

부 칙 (4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